

# 재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3. 10. 19.
개정	2024. 2. 2.
개정	2024. 9. 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핸드볼연맹(이하 '연맹'이라 함) 정관 제13조에 따라 징계와 포상, 분쟁조정의 적정한 시행을 위해 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1. 연맹에 등록된 감독 등 코칭스태프, 선수
2. 구단 및 구단의 운영책임자 등 임직원, 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
3. 연맹 임직원 및 연맹의 지휘 감독의 대상인 단체 및 개인
4. 기타 연맹과 관련한 단체 및 개인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2024. 9. 3. 개정>

1. 제규정의 검토, 관리 및 유권해석
2. 포상과 관련한 사안
3. 제재와 관련한 사안
4. 구단을 비롯한 선수, 코칭스태프 등 구성원들 간의 분쟁 조정
5. 정관 및 규약 등에서 정하는 사안
6.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②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어 필요한 징계처분 및 분쟁조정을 다루도록 할 수 있다.<2024. 9. 3. 신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총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2024. 9. 3. 개정>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사무총장<2024. 9. 3. 신설>
5. 기타<2024. 9. 3. 개정>

④ 연맹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심의 준비, 회의록 작성, 의결사항 통지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⑤ 윤리소위원회는 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경기장 질서 유지, 소청 및 경기 규칙 적용과 관련하여 심판 또는 경기감독관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위원회를 개최한다.<2024. 9.

3. 신설>

**제5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소집)** ① 총재의 지시,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되거나 분쟁 조정 및 징계, 포상과 관련한 사안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2장 운영

[ 종전 제2장은 제3장으로 이동 2024. 9. 3. ]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영상회의 참석 포함)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는 윤리소위원회 및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거나, 서면(전자문서 등)으로 제7조 1항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1. 윤리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며, 다

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사무총장

나. 경기본부장

다. 심판본부장

라. 경기감독관 중 1인

마. 소위원회장이 지정한 1인

2. 윤리소위원회장은 재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1인으로 하며, 윤리소위원장의 소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참석한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3.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적절한 절차에 의해 개최된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소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는 즉시 위원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30일 이내 개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4. 9. 3. ]

[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9. 3. ]

**제8조(제척)**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본조신설 2024. 9. 3. ]

[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9. 3. ]

### **제9조(운영) <삭제> <2024. 9. 3.>**

**제10조(출석, 소명 진술, 자료 제출)** ① 위원회는 징계 및 분쟁 당사자에게 징계 사유,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고지하고 재정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③ 제1항의 징계 사유 통보 및 소명 기회의 제공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대상자 및 해당 구단에게 전자문서 및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을 받은 구단은 지체없이 대상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고서도 출석 또는 징계 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본조신설 2024. 9. 3. ]

[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9. 3. ]

## 제3장 조정

[ 종전 제3장은 제4장으로 이동 2024. 9. 3. ]

**제11조(조정사항)** ① 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구단과 선수 관련 분쟁
2. 구단과 구단 관련 분쟁
3. 기타 연맹 규약에서 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위원회가 처리할 것을 의결한 사항

② 상기1항의 분쟁이란 연봉, 이적료, 선수등록, 임의탈퇴 등 선수 계약 및 연맹 규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의미한다.

[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9. 3. ]

**제12조(운영)** <삭제> <2024. 9. 3.>

**제13조(조정신청)** ① 조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24. 9. 3. 개정>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연락처 주소와 조정신청의 취지 및

이유가 명시된 조정신청서<2024. 9. 3. 개정>

2.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면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원본 또는 사본(외국어 서류일 경우 공증번역을 받아 제출)

3.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명시된 위임장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의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서 사본 1부를 송부함으로써 이를 통지한다.

③ 연봉, 이적료, 선수신분에 관한 분쟁 등 선수의 등록과 관련된 조정신청은 선수등록규정에 따른 등록 마감일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신청 후 선수등록기간이 경과되면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2024. 9. 3. 개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또는 구단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기등록 마감일까지 조정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해당 선수와 구단을 당사자로 하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한다.

[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9. 3. ]

**제14조(이의신청)** ① 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연맹의 관할 범위 내에서 최종적이며, 양 당사자에게 적용된다.<2024. 9. 3. 개정>

② <2024. 9. 3. 삭제>

③ <2024. 9. 3. 삭제>

[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9. 3. ]

[ 제목개정 2024. 9. 3. ]

## 제4장 징계

[ 종전 제4장은 제5장으로 이동 2024. 9. 3. ]

**제15조(대상)** ①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연맹과 협회의 정관 및 규약, 법령을 위반하거나 한국 핸드볼의 위상을 훼손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② 비위자가 징계 심의 당시 신원의 변동 등으로 이 규정 제2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향후 연맹이나 관련 단체, 구단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9. 3. ]

**제16조(징계의 구분)** ① 구단에 대한 징계

1. 제명
2. 자격정지(회원으로서의 권리 제한)
3. 승점감점
4. 선수영입금지
5. 경기제한(무관중 홈경기, 제3지역 홈경기 개최 등)
6. 제재금 부과
7. 경고



② 개인에 대한 징계

1. 제명
2. 자격정지(징계기간동안 연맹 및 구단, 연맹 관련 단체 등에서의 직무 제한)
3. 출장정지
4. 제재금 부과
5. 사회봉사명령
6. 경고

③ 비위행위의 정도, 비위행위의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이후의 정황 및 징계 전력 등을 참작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④ 상기 1, 2항의 징계는 병과될 수 있고, 피해보상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⑤ 구단 임직원 등 구성원의 비위행위나 정관 및 규약, 규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단에 제재를 부과한다.

⑥ 징계 양정 기준은 유형별 징계기준[별지1]에 의한다.

[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9. 3. ]

**제17조(징계 결정의 통보 및 효력)** ① 징계 결정 및 징계결정문은 징계대상자에게

전화, 전자문서, 등기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통보한다.

② 징계대상자가 징계결정문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징계대상자에게 결정문 송달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단체로 송달하는 것으로 조치한다.

④ 징계는 대상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9. 3. ]

**제18조(재심)** ① 위원회의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대상자는 징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9. 3. ]

**제19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 결정은 연맹 사무국이 집행한다.

② 징계의 결정은 징계 결정 후 집행이 가능한 최대한 시일에 집행해야 한다.<2024. 9. 3. 개정>

③ 재심청구로 징계 결정은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재는 사안이 중하거나 집행을 정지하면 징계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현저히 어려운 사항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2024. 9. 3. 개정>

④ 제재금은 부과 결정 효력일에 가장 가까운 징계대상자 출전 경기 전일, 혹은 연맹이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⑤ 제재금 부과 결정 후 해당 시즌에 출장 경기가 없는 경우 시즌 종료일 후 15일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구단에 부과된 제재금은 징계 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2024. 9. 3. 개정>

[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9. 3. ]

**제20조(징계 시효)** ① 비위행위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 다만 승부조작, 불법 스포츠 도박, 금품 수수, 성범죄, 입학(입시)비리, 인종·정파 차별적 언행 관련 비위행위에는 징계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2024. 9. 3. 개정>

② 비위행위자의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징계 절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 9. 3. ]

**제21조(징계의 감경 및 사면 등)** ① 징계 결정이 확정된 후 법령 및 제 규정의 개·폐 등으로 징계 결정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거나 핸드볼 발전을 위하여 긴요한 필요가 있거나 리그의 사정 변경으로 징계 결정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징계 대상자가 개선의 정이 뚜렷한 경우 총재는 스스로 또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징계 결정을 감경 또는 사면(이하 ‘사면’이라고만 함)할 수 있다.<2024. 9. 3. 개정>

② 제명 결정에 대하여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자격정지 또는 출장정지는 효력발생일로부터 2분의 1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사면할 수 있다.

[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 9. 3. ]

**제22조(긴급제재)** ① 긴급제재는 경기와 관련하여 선수, 심판 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경기장 질서 유지 및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윤리소위원회가 팀, 지도자, 선수, 임원, 관중 등에 대해 취하는 즉각 조치를 말한다.

② 윤리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긴급재제 조치를 취한다.

1. 위반 행위에 대해 소위원회 심의 후 최대 4경기 이하 출전정지 조치

2. 4경기를 초과하는 징계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추가 징계 요청

3. 긴급재제 조치 후 즉시 위원회에 결과 보고

③ 위원회는 상기 2항2호에 의거하여 보고된 사안은 소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4. 9. 3. ]

## 제5장 포상

**제23조(대상)** 한국 핸드볼의 위상 제고, 보급·육성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을 실시한다.

**제24조(심의)** ①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와 관련한 포상은 성적에 따라 연맹 사무국 및 관련 기구에서 심의·포상한다.

② 제1항의 대회 외의 사유로 인한 포상 심의는 위원회가 심의한다.

③ 정부나 협회, 국제핸드볼기구, 각종 체육단체나 유관단체 등의 포상 추천은 위원회가 심의한다.

**제25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대회 순위에 따른 상

2. 표창
3. 공로상
4. 감사상
5. 기록 달성에 의한 상
6. 기타

② 포상의 대상·기준·내용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총재가 정한다.

## **부칙(2023.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단,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결의 이전 발생 사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 AHF, IHF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2024.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제1차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단,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결의 이전 발생

사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2024. 9.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제3차 이사회 의결이 있는 다음날  
부터 시행한다.